

이탈리아 고용보험제도의 개정 동향

신수정

서울시립대학교 강사

I. 들어가며

지난 3월 4일 실시된 이탈리아 총선에서는 집권당인 마테오 렌치 총리의 '민주당(PARTITO DEMOCRATICO)'이 참패하고 강경난민정책과 반(反)유럽연합을 표방한 '동맹당(LEGA)'과 반(反)유럽연합 성향의 포퓰리즘 정당인 '오성운동(MOVIMENTO 5 STELLE)'이 약진하였다. 총선 결과 극우·포퓰리즘 정당들이 연정협상을 주도하게 됨에 따라 연정협상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며 정당 간 새로운 연대움직임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탈리아의 정세는 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변할 것이다. Corriere della Sera(코리에레 델라 세라; 신문)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탈리아 국민의 51%는 연정이 실패할 경우 총선을 다시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 답했다고 한다.

이번 총선에서 우파 성향과 포퓰리즘 성향의 정당들의 약진은 기성정당들에 대한 불만족이 표출된 것이며 어려운 경제상황과 난민문제가 표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집권당인 민주당은 사상 최저 수준인 약 20~23% 득표한 것으로 집계되는데, 이는 마테오 렌치의 노동법 및 고용보험법 등의 개정과 더딘 경제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 표현으로도 분석할 수도 있다.

이탈리아는 유럽의 대표적 경제위기 국가인 PIGS⁰¹ 중에 하나로, 이러한 경제위기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의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탈리아의 실업률은 11.4%에 달하고 청년 실업문제는 이보다 더 심각하여, 25세 이상 청년실업률의 경우에는 2017년 7월 기준 39.2%를 기록하고 있다(EU 평균 18.7%).⁰²

경제위기로 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이 심각해짐에 따라 2014년 2월에 탄생한 중도 좌파 렌치 정권은 이탈리아 경제위기 해결을 위한 구조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동시에 해고 규제를 완화하는 ‘노동법 개정’을 진행하였다.

마테오 렌치(Mateo Renzi) 총리가 “경기침체에 빠진 이탈리아를 회복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1970년대 이후부터 유지되고 있는 노동법을 현재에 맞게 바꿔야 한다”며 의회에 제안한 노동법 개정의 핵심은 1970년 5월 20일 법률 제300호 노동자권리법(Statuto dei diritti dei Lavoratori)⁰³ 제18조이다. 1970년 법률 제300호 제18조는 재판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된 경우, 사용자는 해고일로부터 선고일까지의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원직복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해고제도의 완화와 함께 고용보험제도의 개편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본고에서는 이탈리아 고용보험제도(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01 유럽 국가 가운데 최근 심각한 재정 위기와 국가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포르투갈(Portugal), 이탈리아(Italy), 그리스(Greece), 스페인(Spain)의 앞 글자를 조합해 만든 신조어다. 최근 재정과 경상수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위기에 직면한 유럽 국가가 증가하면서, PIGS에 아일랜드(Ireland)가 포함된 'PIIGS', 영국(Great Britain)이 포함된 'PIIGGS'라는 용어도 만들어졌다(출처: 시사경제용어사전 기획재정부, 2010).

02 2014년 12월에 이탈리아의 실업률은 12.6%, 25세 이상 청년실업률은 43.9%로(EU 평균 21.9%)가 가장 높았고, 이후 실업률과 청년실업률 모두 다소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이탈리아 정부에서는 실업률이 낮아진 원인을 노동법개정을 통한 해고규제완화에서 찾기도 한다.

03 1970년 5월 20일 법률 제300호로 입법화된 노동자권리법(Statuto dei diritti dei Lavoratori)은 “노동 있는 곳에 권리가 있다.”라는 원칙을 확립하였다. 이 법률은 기업 내에서 근로자의 자유 및 존엄을 보장하는 것, 기업외부의 존재인 노동조합의 기업 내 활동을 지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탈리아 노동법에서 기본법의 지위를 갖는다. 노동자권리법은 사용자의 부당해고를 막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이탈리아 고용보험제도 개관

이탈리아의 고용보험제도에는 실업급여(indennità di disoccupazione)와 이동수당(indennità di mobilità)이 있다. 헌법 제38조 제2항은 비자발적 실업의 경우에 근로자는 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급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⁰⁴

이를 기초로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1988년 5월 20일 법률 제160호, 2005년 5월 14일 법률 제80호, 2012년 6월 28일 법률 제92호 등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⁰⁵ 실업급여는 2012년 법률 제92호에 의해 2013년 1월 1일부터 ASpI과 Mini AspI로 구분되었고, 2015년 3월 4일 위임입법 제22호에 의해 2015년 5월 1일부터 NASpI로 통합되었다. 이동수당에 대해서는 1991년 7월 23일 법률 제223호, 1997년 5월 26일 위임입법 제151호, 2015년 3월 4일 위임입법 제22호 등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⁰⁶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실업한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자발적으로 퇴직한 자에게는 정당한 이유에 의한 사직(임금미지급, 성희롱, 직무 변경, 괴롭힘 등)과 임신, 출산에 의해 퇴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되지 않는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에서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임금 총액의 1.61%(아래 표 1 참조)이다. 근로자에게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사업주가 보험료 납부를 태만한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는 지급된다.

04 이탈리아 헌법 제38조는 사회보장의 권리를 명기하고, 산재, 질병, 장애, 노령, 비자발적 실업 등에 대한 보장(제2항), 노동능력이 없는 자 및 장애인에 대한 교육 및 직업훈련을 받을 권리(제3항)를 정하고 이러한 권리의 실현은 국가의 의무로 하면서(제4항), 사적인 원조활동의 자유도 인정하고 있다(제5항).

05 이탈리아의 법은 새로운 법의 제정으로 이전 법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 법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형식의 법이 제정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06 15인 이상의 제조업 사업장과 50인 이상의 상업 사업장(운전, 운수 및 여행업)의 근로자들이 집단해고의 영향 아래 있을 때 소득 지원을 하기 위해 1991년 7월 23일 법률 제223호에 의해 만들어졌다. 따라서 대상 범위는 이 부문들의 핵심 종속 근로자들로 한정되어 있고 서비스업과 소규모 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는 물론 임시파견직 근로자들도 배제되어 있다. 즉, 노동이동제도의 경우 대규모 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본고의 주제와 관련이 없어 이하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한다.

[표 1] 2017년 보험료율

	회사 부담		근로자 부담
	15인 미만 사업장(%)	15인 이상 사업장(%)	생산직 및 사무직 (15인 미만 및 이상. %)
연금	23.81	23.81	9.19
실업급여	1.61	1.61	-
이동수당	-	0.30	-
퇴직수당 보증기금	0.20	0.20	-
가족수당기금	0.68	0.68	-
계	26.30	26.60	9.19

자료 : 2017년 INPS(Tabelle dei contributi in vigore dal mese di gennaio 2017)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노동사회부의 감독 하에 전국사회보장공단(INPS; Istituto Nazionale della Previdenza Sociale)에서 실시하고 있다.

III. 이탈리아 고용보험제도의 내용

1. ASpl(Assicurazione Sociale per l'Impiego)

ASpl는 2013년 1월 1일부터 비농업부문에 종사하는 모든 종속 근로자(가정내 근로자 포함)에게 적용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종속 근로자에는 훈련근로자, 종속적인 개인 예술인, 협동조합의 구성원, 공공행정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 모성보호 기간 동안 휴직 후 근로를 중단한 근로자(출생 전 300일부터 생후 1년까지)가 포함된다. 실업보험의 대상이 되는 실업상태는 부분적인 것도 가능하다. 즉, 복수의 직업을 가진 근로자의 주된 활동인 근로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도 실업보험제도의 대상이 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노동능력이 있을 것
- 실업이 비자발적일 것(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도 가능)
- 지역 노동청의 직업소개리스트에 등록할 것
- 근로계약 종료 전 2년 동안 52주 이상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을 것. 다만, 건설업의 경우 근로계약 종료 전 2년 동안 43주 또는 10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을 것

다음의 경우 실업급여수급이 정지된다.

- 수급기간이 종료한 경우
-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INPS에 알리지 않고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
- 연금 수급을 개시한 경우
- 재취업을 위한 개별 프로그램의 참가를 거부한 경우
- 실업 전 8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일자리에 대해서 구인에 응하지 않은 경우
- 공공기업의 업무, 서비스에 고용되는 것을 거부한 경우

ASpI의 지급기간은 2013년 이전에는 50세 미만 8개월, 50세 이상 12개월, 2014년에는 50세 미만 8개월, 50세 이상 54세까지 12개월, 55세부터 14개월, 2015년에는 50세 미만 10개월, 50세 이상 54세까지 12개월, 55세부터 16개월, 2016년부터 54세까지는 12개월, 55세부터 18개월이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2] ASpI의 지급기간

	연령구분		
	50세 미만	50세~55세 미만	55세 이상
2013	8개월	12개월	12개월
2014	9개월	12개월	14개월
2015	10개월	12개월	16개월
2016	12개월	12개월	18개월

자료: 2017년 INPS(<http://www.inps.it/portale/default.aspx?itemdir=8292>)

ASpI의 지급금액은 2012년 이전까지 근로계약 종료 후 최근 3개월의 평균임금(월액)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하였다. 50세 미만의 경우 최초 6개월 동안은 평균임금(월액)의 60%, 7~8개월 동안은 평균임금(월액)의 50%, 50세 이상의 경우 최초 6개월 동안은 평균임금(월액)의 60%, 7~8개월 동안은 평균임금(월액)의 50%, 9~12개월 동안은 평균임금(월액)의 40%을 지급받는다.

2013년 이후(2015년 기준)에는 지난 2년간 과세대상소득이 1,195.37유로(약 149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의 75%, 지난 2년간 과세대상소득이 1,195.37유로(약 149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의 75%에 소득과 1,195.37유로와의 차액의 25%를 추가하여 지급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법에 의해 설정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Mini ASpI

Mini ASpI의 대상자는 ASpI와 동일하다. 수급요건도 ASpI와 동일한데, Mini ASpI의 경우 2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실업 이전 12개월 동안 13주 이상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으면 지급받을 수 있다.

Mini ASpI는 수급기간이 종료한 경우, 5일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INPS에 알리지 않고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 연금 수급을 개시한 경우, 재취업을 위한 개별 프로그램의 참가를 거부한 경우, 실업 전 8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일자리에 대해서 구인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급여지급이 정지된다.

Mini ASpI의 지급기간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실업급여 납부 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지급받는다. 예를 들어 20주 동안 납부했다면 10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2013년에 도입된 Mini-ASpI은 2014년 기준으로, 지난 2년간 과세대상소득이 1,192.98유로(약 148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의 75%, 지난 2년간 과세대상소득이 1,192.98유로(약 148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의 75%에 소득과 1,192.98유로와의 차액의 25%를 추가하여 지급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법에 의해 설정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NASpI(Nuova prestazione di Assicurazione Sociale per l'Impiego)

NASpI는 2015년 3월 4일 위임입법 제22호에 의해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비자발적인 실업에 대해서 ASpI와 Mini ASpI를 대체한다.

따라서 대상자는 Mini ASpI 및 ASpI와 동일하다. 2013년 1월 1일부터 비농업부문에 종사하는 모든 종속 근로자(가정내 근로자 포함)에게 적용되고, 훈련근로자, 종속적인 개인 예술인, 협동조합의 구성원, 공공행정(학교 포함)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 모성보호 기간 동안 휴직 후 근로를 중단한 근로자(출생 전 300일부터 생후 1년까지)에게 적용된다.

NASpI의 수급요건은 다음의 같다.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만 수급받을 수 있다.

- 노동능력이 있을 것
- 실업이 비자발적일 것(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도 가능)
- 지역 노동청의 직업소개리스트에 등록할 것
- NASpI의 경우 2년을 필요로 하지 않음
- 실업 이전 4년 동안 13주 이상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으면 됨
- 또는 실업 이전 12개월 동안 30일 이상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으면 됨

다음의 경우 실업급여수급이 정지된다.

- 수급기간이 종료한 경우
- 한 달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여러 시간제 근로관계 중에서 적어도 하나를 그만 두고, NASpI의 요청 후 한 달 이내에 다른 시간제 근로에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INPS에 알리지 않고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
- 연금 수급을 개시한 경우
- 재취업을 위한 개별 프로그램의 참가를 거부한 경우

NASpI의 지급기간은 이전 4년 동안 실업급여 납부 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지급받는다. 2017년 1월 1일부터 최대 78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급금액(NASpI 2015년 시행)은 2015년 이후에는 지난 4년간 과세대상소득이 1,195유로(약 149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의 75%, 지난 4년간 과세대상소득이 1,195유로(약 149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의 75%에 소득과 1,195유로와의 차액의 25%를 추가하여 지급 받는다. 실업급여 지급총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1,300유로를 초과할 수 없다(2015년 기준).

4. Dis-Coll

2015년 3월 4일 위임입법 제22호로 제15조로 도입된 Dis-Coll(Indennità di Disoccupazione per i lavoratori con rapporto di collaborazione coordinata)은 준종속근로자에게 고용보험제도를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2015년 위임입법 제22호는 근로자(제1장, 제1조~제14조)와 준종속근로자(제2장 제15조)를 구분하여 고용보험제도를 설계하였다. 위에서 소개한 NASpI는 비자발적으로 실업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이고, Dis-Coll은 비자발적으로 실업한 준종속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이다. Dis-Coll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시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2015년 12월 31일까지에서 1년 연장됨).⁰⁷

Dis-Coll 실업급여는 준종속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업한 경우에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 2015년 법률 제150호 제19조의 실업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 실업 이전 연도(시행 시기를 고려하면 2014년)의 1월 1일부터 실업 상태가 된 날짜의 사이에 적어도 3개월 이상 가입한 경우⁰⁸
- 2015년 이후 적어도 한 달 이상 가입한 경우 또는 비임금근로자로 노무를 제공한 기간이 적어도 한 달 이상이고, 그 수입의 절반 이상의 소득을 한 장소에서 얻은 경우^{09,10}

⁰⁷ <http://www.inps.it/portale/default.aspx?itemdir=11346> 2018.3.3. 검색

http://www.jobsact.lavoro.gov.it/documentazione/Documents/Decreto_Legislativo_4_marzo_2015_n.22.pdf 2018.3.3. 검색

⁰⁸ 예를 들어, 2016년 3월 31일에 프로젝트 계약이 종료된 경우, 2015년 1월 1일부터 INPS에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⁰⁹ possano far valere nell'anno solare 2015 almeno un mese di contribuzione, oppure un rapporto di collaborazione coordinata e continuativa, anche a progetto, di durata pari almeno ad un mese e che abbia dato luogo ad un reddito almeno pari alla metà dell'importo che dà diritto all'accredito di un mese di contribuzione.

¹⁰ 위와 동일한 금액을 예로 들면, 비임금근로자가 연봉 15,5248유로 중 647.83유로 이상을 한 장소에서 얻은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실업상태가 된 날로부터 8일 이내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Dis-Coll 실업급여는 실업 이전 년도 1월 1일부터 실업한 날짜 사이에 납부한 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월수에 대해 매월 지급된다. 그러나 최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매월 1,300유로를 초과할 수 없다. Dis-Coll 실업급여 지급금액은 NASpI의 지급금액과 동일하다.

2015년 이후에 지난 4년간 과세대상소득이 1,195유로(약 149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의 75%, 지난 4년간 과세대상소득이 1,195유로(약 149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의 75%에 소득과 1,195유로와의 차액의 25%를 추가하여 지급받는다. 실업급여 지급총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1,300유로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Dis-Coll 실업급여는 4개월째(91일째부터) 실업급여액의 3%에 해당하는 양만큼 감소된다.

IV. 결론

지난 5월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단계적 적용 확대를 국정과제로 제시(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2017.7)하였다.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실업 위험에 노출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법률 개정안(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¹¹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입법 전망이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개정 법률안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산재보험 적용 직종에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산재법 제125조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려면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해야 하고,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해야 한다. 즉, 현재 계류 중인 입법안의 적용대상 확대방안은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현실을 살펴보면,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중간적 위치에서 일하는 사람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일하는 방식도 매우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일을 못하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보호를 할 수 있을 것인가는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 중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고민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당면 과제 중 하나이다.

이탈리아는 2015년 노동법 개정¹²을 통해 준종속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2015년 3월 4일 위임입법 제22호는 임금 근로자와 준종속 근로자를 구분하여 고용보험제도를 설계하였는데, ‘NASpI’는 비자발적으로 실업한 임금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이고, ‘Dis-Coll’은 비자발적으로 실업한 준종속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이다.

11 2016.6.30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16.8.12 문진국 의원 대표발의, 2016.9.29. 장석춘 의원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참조.

12 이탈리아의 노동법 개정의 역사는 200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지난 2011년 유럽 경제위기로 위험에 빠진 이탈리아 경제를 구출하기 위해 실무가 위주로 구성된 마리오 몬티(Mario Monti) 전 총리 정부는 2012년에 해고절차 완화와 실업수당 대상 확대(지금 액수와 기간은 축소) 등의 방향으로 노동법 개정을 시도하였다. 몬티 정부의 개정안은 2017년부터 이탈리아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인데, 2014년 말에 렌치 정부는 이에 덧붙여 2012년 개정안을 보완하는 총체적인 개정안을 추진한 것이다.

이탈리아에서 고용보험제도를 준종속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Dis-Coll’은 어느 한 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우선, 1973년 민사소송법 개정에 의해 준종속 근로자 개념이 실정법으로 들어왔고, 2003년 법률 제276호는 ‘Co.Co.Co.’¹³의 요건을 규제하기 위해 ‘Co.Co.Pro.’¹⁴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그리고 포르네로 개혁 이후에 2012년 법률 제92호는 프로젝트 노동계약으로 개념이 수정되고, 2015년 법으로 내용이 추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준종속 근로자에 대한 법들이 제·개정을 통해 형성되면서 준종속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도 함께 형성되었다.

즉, 이탈리아는 노동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임금 근로자 이외에 준종속근로자 개념을 법제화하였고, 이후에 근로계약과 사회보험을 분리하여 준종속 근로자를 사회보험에 가입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이탈리아의 고용보험제도 개정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대상 확대 논의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3 Co.Co.Co(Collaborazioni Coordinate e Continuative; 계속해서 조율되는 협력적 노동관계)는 근로계약을 맺고 있지 않은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는 독립 노동 제공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발주자의 경제 활동에 지속적으로 필요한 기능적 관계를 포착하는 개념이다.

14 1973년에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개념인 ‘Co.Co.Co.’의 부당한 이용과 종속 노동의 위장을 규제하기 위하여, 2003년 9월 10일 법률 제276호는 제61조에서 ‘Co.Co.Co.’의 요건을 규제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노동(lavoro a progetto; Co.Co.Pro.)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Co.Co.Pro.’에 의하면, 민사소송법 제409조의 개념인 ‘Co.Co.Co.’는 “사용자에 의해 결정되는, 하나 또는 복수의 특정한 프로젝트나 노무제공프로그램 또는 그 일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하나의 프로젝트는 그 최종 결과를 위해 프리랜서가 자신의 노동력으로 직접적으로 참가하는 특정한 최종적인 결과물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프로젝트는 달성되어야 하는 목적과 그 목적이 달성되어야 하는 최종적인 날짜를 전제하게 된다. 사용자에 의해 설정된 프로젝트는 당해 기업의 주요한 활동 또는 그 부수적 활동의 하나와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 박제성 외, 『비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외국법제』, 한국노동연구원, 2016
- 박찬임 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산재보험 적용확대 및 보험료 부과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7
- 신수정, “이탈리아 헌법에서의 노동기본권”, 「공법연구」 제42집 제1호, 한국공법학회, 2013
- 신수정, “이탈리아의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법연구」 제2권 제2호,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13
- 신수정, “이탈리아의 해고법제”, 노동법학 제55호, 한국노동법학회, 2015
- 신수정, “이탈리아의 해고구제 방법과 절차”, 2016. 10. 21. 비교노동법학회 추계학회 발표, 2016

- Annamaria Minervini, *Il lavoro a tempo parziale*, Università degli studi di bergamo, Giuffrè, 2009
- Antonio di Stasi, *Manuale Breve Diritto del lavoro e della Previdenza sociale*, Giuffrè, 2012
- F. Carinci ed altri, *Diritto del lavoro vol. 2 rapporto di lavoro*, 8a ed., UTET, 2013
- Mattia Persiani e Franco Carinci, *Le Fonti del Diritto del Lavoro*, Cedam, 2010
- Tiziano Treu, *Labour law and industrial relations in italy*, Kluwer law, 2007.
- ISTAT, *Annuario Statistico Italiano 2015*

- | | |
|-------------|---|
| 이탈리아 국회 | http://www.parlamento.it/home |
| 이탈리아 노동부 | http://www.lavoro.gov.it/Lavoro |
| 이탈리아 법무부 | http://www.giustizia.it/giustizia/ |
| 이탈리아 통계청 | http://www.istat.it/ |
| 이탈리아 사회보험공단 | http://www.inps.it/ |